

2021년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유경제 기업 지정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 및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21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희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단체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재)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및 공유경제 개념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를 부산시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형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경제 기업·단체의 성장을 지원

공유경제 기업 유형 및 사례

-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모빌리티공유 : 자전거, 차량, 운송 연계 등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등 비즈니스 공간, 사무공간 등
 - 물품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 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등
- 공유경제 활용사례
 - 매장의 여유 공간을 공유해 여행자의 수하물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 여행자는 수화물을 들고 다니지 않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고 여유공간이 있는 상점은 공간 임대료 수익창출 및 상점 방문 유도 효과
 -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 · 현장사진 · 사건사고 등 공사 현장정보 제공하여 납품업체는 마케팅 기회, 건축주에게는 양질의 자재구입 기회,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현장 선택 기회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공유경제 패러다임 변화 양상

-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도 많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등장
 - 우버 : 공유승차 시장에서는 타격을 입었지만 우버이츠(Eats) 배달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재도약 → 미국 4위 배달 업체 인수 후 현지 배달 시장점유율 37% 차지
 - 에어비앤비 : 주문형 거주서비스 또는 생활숙박으로 시장 확대 → 나스닥 상장 첫달에 주가 2배 이상 뛰며 공유숙박 잠재력 확인
 - 당근마켓 : 2019년도 전자상거래 부문 11위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며 쿠팡의 뒤를 잇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앱 9위에 랭크)
 - ⇒ 기존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형성
- 경기침체로 인한 가성비 열풍, 언택트 산업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 등의 요인이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
 - 팬데믹 이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성비 중심의 소비 패턴 등장 →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별도의 투자나 노력 없이 수익 창출 가능
 -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및 보편화 → 화상회의,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쇼핑 등에 자주 노출되면서 디지털 혁신이 일상화됨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4. 29.(목) ~ 5. 28.(금) 18:00
- 신청분야
 - ┌ 공유기업·단체 지정(3년간) : 사업비 지원자격 부여, 컨설팅 등 지원
 - └ 공유경제 촉진지원 사업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신청대상 : 자원 및 서비스의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 신청방법 : 지정양식 기재 및 날인 후,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 제출 (startup@bepa.kr)
- 결과통보 : 6월 중(예정) 부산경제진흥원(www.bepa.kr) 및 공유경제 부산(www.sharebusan.kr) 홈페이지 게시 후 개별통보

3 신청요건 및 지원개요

□ 공유기업·단체 발굴 및 지정

1. 신청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5081호] 에서 정의 하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대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②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⑥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⑦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 자원 및 서비스의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경기침체, 공공 유희자원, 일자리 부족, 공동체 와해, 고령화, 청년주거, 문화소외, 주차부족, 환경문제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2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보유할 것
- (공고일 기준) 부산시 내에서 공유경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 지사 및 지점 보유, 부산지역 내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 포함

2. 지원내용

- 지정규모 : 15개사 내외(재지정 포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사항
 - 부산시 공유기업 지정서 및 ‘공유경제부산’ BI 사용권 부여
 - 공유기업 컨설팅 지원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 ※ 공유기업·단체로 지정될 경우 지원자격 부여

1. 신청대상

- 2019~2020년도 기 지정 공유경제 기업·단체
- 2021 부산시 공유기업·단체 지정(재지정) 신청대상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단체
 - ※ 당해 연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분야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향후 공유경제 사업 확장 및 신규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유기업 10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 ※ 최근 3년간 동 사업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금 3천만원 이내에서 구간별·기업별 차등 지급
 - 총 소요금액 중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자부담 10%)
- 지원요건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한도

구 분	2천만원 이상(3개사 내외)	1천만원 이하(6개사 내외)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 사업실적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단체 ○ 우대사항 : 혁신성장동력분야* 해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내에서 공유경제 사업을 영위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지원금액 결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전문가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확정 ○ 2단계 : 사전컨설팅을 통한 지원금액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심사를 통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혁신성장동력 : 지능형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등 4개 분야의 13개 항목산업**
 ▶ ①지능형인프라(빅데이터·차세대통신·인공지능) ②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③융합서비스(헬스케어·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지능형로봇) ④산업기반(지능형반도체·첨단소재·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

- 지원항목 : 플랫폼 및 시제품 개발비, 홍보·마케팅비 등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해당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3. 지원절차 및 지원금 신청기한

○ 지원절차

협약체결	사업비 지출	사업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산정·지급
- 협약체결(BEPA ↔ 지정기업·단체)	- 사업비 선지출 (지정기업·단체)	- 지원금신청서 제출 (지정기업·단체 → BEPA)	- 지원금신청서 검토 - 지원금 산정/지급 (BEPA → 지정기업·단체)

○ 지원금 신청기한 : 2021. 12. 10.(금)

▶ 사업비 집행기한 : 2021. 11. 30.(화)

4 제출서류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신청 관련서류와 사업비 지원금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기의 제출서류는 서류심사를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미제출 시에는 심사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유기업·단체 발굴 및 지정 신청

①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신청서

- 신규신청 :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신청서 【서식1-1】

- 재지정 : 공유경제 기업(단체) 재지정 신청서 【서식1-2】

② 신청기업(단체) 상세정보 【서식1-3】

③ 지정요건 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법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④ 사업계획서 (자유 양식)
 - ▶ 공유대상, 공유방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상세히 기술
 - ▶ 사업의 범위, 내용, 비전, 기대효과 등을 포함할 것
- ⑤ 최근 2개월 이상 공유사업 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등 영상자료, 홍보물, 언론보도자료 등
- ⑥ 심사와 관련된 자료
 - ▶ (공통) 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 (단체)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 ▶ (기업) 정관 또는 규약(개인사업자 제외), 전년도 사업실적
 - ▶ (기업)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
 - 최근 3년간(2018~2020)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 창업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미 보유 시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갈음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시 지원자격 부여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금 신청서 【서식2-1】
- 공유경제 촉진 사업계획서 【서식2-2】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금 집행계획서 【서식2-3】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5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①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항목	평가 지표
공유경제 관련성	공유활동 실적, 계획 타당성
지속가능성	재무상태, 수익성, 법·제도 저촉여부 등
사회 관련도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
참여도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참여도, 확산성(플랫폼 운영)

②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

항목	평가 지표
공유경제 촉진효과	공유경제 사업의 촉진 효과성, 기대효과
사업계획 타당성	구체성, 차별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사업비 운영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인력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
일자리창출 가능성	협약 기간 내 신규 일자리창출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심사절차 및 일정

가. 심사절차

- 공유기업·단체 지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지정대상 결정
- 공유경제 촉진 사업비 지원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지원대상 결정

나. 결과통보

- 부산경제진흥원(www.bepa.kr) 및 공유경제부산(www.sharebusan.kr) 홈페이지 게시 후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신청요건은 공고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필요시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7 지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 지정취소

- 공유기업·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에 의거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지정기업·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업·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지정이 취소된 기업·단체는 공유경제 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지정 취소 요건 ◆

- 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대면심사 시 답변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 ③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④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 ⑤ 지정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 ⑥ 지정 후 연속 6개월 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 ⑦ 지정을 유지하여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및 사업비 지원금 환수

- 상기 지정 취소 요건의 ①~④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은 환수 조치됨
- 상기 지정 취소 요건의 ⑤~⑦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전 통보 및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지원금 수령 및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기업·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팀 김민영 과장
☎ 051-600-1865 / ✉ startup@bepa.kr